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 센터 운영규정 내용을 부분 발췌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제11조(계약기간) 본 기관과 이용자, 보호자 간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.

제12조(계약목적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(또는 이용자)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심신 안정과 더불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.

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

제13조(계약방법)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.

순번	계약 절차	계약절차에 따른 방법
1	상담 및 서비스 신청	유선연락 및 사무실 내방 등을 통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를 신청한다.
2	서비스 사전조사	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, 이용자 건강상태를 파악한다.
3	계약체결	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및 내용을 안내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4	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	원하는 서비스와 시간, 일자, 장기요양요원 등의 내용을 확정한다.
5	서비스 제공	담당 요양보호사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
6	비용청구	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한다.
7	모니터링	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 하여 지속 및 보완 진행한다.

※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용자가 치매 또는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,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기관은 급여개시일 전에 표준약관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·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.

제14조(월 이용료)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(2024.01.기준)

(단위 : 원)

장기요양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 한도액(원)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

※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※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,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
②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(2024.01.기준)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6%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%

※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기관명의 은행 / 101-2090-2467-00(부산은행, 예금주 : 박가네재가복지센터)로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.

③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요양(2024.01.기준)

분 류	금액(원)
30분 이상	16,630
60분 이상	24,120
90분 이상	32,510
120분 이상	41,380
150분 이상	48,250
180분 이상	54,320
210분 이상	60,530
240분 이상	66,770

※ 심야가산 : 22시 이후 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한다. 단,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산정하지 아니한다.
※ 공휴일가산 :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한다.
※ 유급휴일가산 :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%를 가산한다.
※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.

④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목욕(2024.01.기준)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84,67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76,34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7,670

⑤ 그 밖의 비용부담액 :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 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.

제15조(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)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을 포함한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구 분	세부내용
수급자의 의무	•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• 재가서비스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준수 • 장기요양급여 이용한도 준수 •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서비스제공자의 의무	• 재가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•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•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•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
신원인수인 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	• 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 받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•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•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•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•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•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•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
신원인수인 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	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•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•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,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•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

	• 전염성 및 폭력성향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 책임에 대한 의무 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,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•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이용·종결 절차,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
기관의 권리와 의무	•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기술 교육 실시 •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

제16조(계약의 해제)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
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⑦ 보호자 및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(타 서비스 이용, 이사, 보호자 요청 등)

※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